

#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애 독재

조영길 (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 동성애 독재 옹호 논리에 무너진 서구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상황

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에 수많은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을 벌여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키려는 논의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주된 내용은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하는 것과, 동성애를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용어인 “성적지향”을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는 것이다(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됨).

동성애와 사실상 동성애를 옹호해 온 기관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동성애를 인간의 보편적

인 인권보다 더 높은 가치로 격상시켜 동성애를 비판하는 일체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통제하여 국민의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사실상의 동성애 독재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차별금지법 입법시도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하는 헌법 개정 활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신앙의 자유를 위협받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앞세워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활동들이 만연해진 데에는 동성애가 앞서 서구 국가들이 동성애에 무너졌던 원인인 ‘차별’과 ‘인권’으로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서구 국가들에서는 전문학문들이 정교하게 만들어낸 ‘차별’과 ‘인권’이라는 동성애 독재 옹호 논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었고, 성경말씀을 따라 동성애 공격을 막아내야 할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도 이 논리에 넘어가 교회가 복음 앞에 분열되어, 결국 동성애 독재법리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서구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양심적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자 커플의 웨딩케익 주문을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거절한 빵집 주인이 약 2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다수의 동성애 옹호자들로부터 살해협박과 저주를 받았다.<sup>1</sup> 동성애자들의 결혼 주례를 거부한 목사에게 대하여 징역형과 함께 동성결혼 주례를 할 때까지 매일 1,000달러의 벌금을 무는 법원판결이 내려졌고,<sup>2</sup> 미

1. “동성결혼식에 판매 거부한 빵집 부부, 끝내 유죄”, 크리스천 투데이 2015.2.5.자 기사.

2. “미, 동성애는 보호하고 종교, 양심은 유린하나”, 크리스천 투데이 2015.9.4.자 기사. 항소심에서는 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동성애와 동성애를 옹호해 온 기관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동성애를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보다  
더 높은 가치로 격상시켜  
동성애를 비판하는 일체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통제하여

국민의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사실상의  
동성애 독재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국 교단에서는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있는 반면, 오히려 동성애에 반대하는 목사는 목사직에서 면직되었다.<sup>3</sup> 이 모든 것이 동성애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차별금지법의 실상이고 이미 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 옹호 논리와 이를 근거로 한 수많은 동성애 옹호조장활동들은 앞서 서구 국가들이 지켜 왔던 복음과 도덕을 동성애 독재 진영에 순식간에 내어준 일련의 과정들과 놀랍도록 닮아있다.

본고에서는 인권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면서,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하여 우리나라에 수많은 폐해들을 초래하고 있는 동성애 옹호조장활동들의 부당성에 대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3. “美 감리교, 동성애 반대 목사 면직, 교단법 역행”, 크리스천 투데이 2015.5.13.자 기사.

**인권의 당위성은 도덕성을 핵심으로 하므로, 부도덕함을 내포한 권리는 인권이 아니다**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누구나 누리며, 어느 곳에서나 마땅히 가지는 권리이다. 부나 권력, 인종이나 성별, 나이, 학력, 장애 여부 등의 조건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나 자연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서 개인의 노력, 품성과 같이 후천적인 조건이나 기준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인권은 천부인권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는 영국 권리장전, 미국 독립선언, 프랑스 인권선언, UN헌장, 세계인권선언에서 확인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고(헌법 제 10조), 구체적으로 헌법 제 11조(평등권) 이하에서 국민의 기본권 항목 등에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차별 받지 않을 자유(인종,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가기 때문에, 결코 그 내용에 부도덕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규범으로 차별금지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편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고, 부도덕한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인종, 성별, 장애 등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차별금지사유들에 부도덕하다는 평가가 전혀 없다.

국가가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의 의미는 개인이 개인적 영역 및 사회적 영역에서 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당위성은 이러한 인권이 보호되고 실현됨으로써 국가 사회 공동체 및 개인에게 선과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성립되며, 이와 반대로 부도덕함을 내포한 어떠한 가치를 보호함으로써 개인, 사회, 국가에 유해한 결과들

이 초래된다면 그것은 인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부도덕한 가치를 법으로 보호해서 안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는 민주 사회의 도덕에 부응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세계인권선언 제 29조 제 2호). 우리 헌법도 개인의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헌법 제 37조 제 2항). 나아가 정당한 도덕률에 반하는 법률은 그 자체로 존립의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것이 자명한 법원리로 존재하고 있는바, 그만큼 도덕이라는 가치는 인간사회 질서유지 규범인 법보다 상위의 개념에 있다.

따라서 인권은 반드시 도덕적이고 개인, 사회, 국가에 유익한 것이어야 하므로 도덕을 배제한 인권의 논의는 불가능하며, 도덕성을 상실하거나 개인, 사회,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권리가 결코 법으로 보호해야 할 인권이 아님은 자명한 것이다.

**성적지향(동성애 성행위)은 그 자체로 부도덕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사회·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결코 법률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

성적지향은 동성애 독재 옹호론자들이 그 용어에 내포된 온갖 부도덕함을 은폐하여 도덕적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인간 내면의 감정, 욕구의 영역으로 숨어들어가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용어다. 그러나 법률적·도덕적 책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특히 동성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감정이 아닌 외부의 행동, 즉 동성애 성행위를 다루어야 한다.

성적지향은 주로 동성을 향한 성적 욕망을 전제로 한 각종 행위들(동성애 성행위,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로 알려져 있지만, 그 밖에 수많은 부도덕한 성적 행위들(수간 및 수간 옹호조장활동, 소아성애 및 소

아성애 옹호조장활동, 간통 및 간통 옹호조장활동 등)을 모두 포괄하는 지극히 부도덕한 의미를 내포한 용어이다.

동성애 성행위는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만족행위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입장이다. 압도적인 다수 국민들도 동성애 및 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조장하는 것은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선량한 성도덕 관점에서의 반대는 우리나라에서 유구한 역사상 단 한번도 변경된 바 없는 확고한 견해이다.

### 성적지향이 부도덕한 핵심적인 이유는 개인·사회·국가에 초래하는 심각한 유해성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지향 문구를 근거로 벌여 온 동성애 옹호조장활동들이 초래한 도덕적·보건적 폐해들은 매우 심각하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의해 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의미가 삭제되었고, 2004년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가 삭제되어 청소년들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영상물에 아무런 제한 없이 노출되기 시작했으며, 2006년 이후 교육현장에서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교육자료들이 사라진 반면 동성애 및 동성애 성행위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교육되고 있다. 또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신청지침 중 성기제거수술시행 조건은 차별이므로 시정하라고 권고하여 성기를 제거하지 않아도 성별을 정정하는 법원 결정이 나오고 있고, 2011년에는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동성애 성행위가 에이즈감염의 주된 경로라는 객관적 사실의 언론보도가 금지시켰다. 반면, 동성애 성행위의 유해성을 알리며 비판 활동을 한 자에 대하여는 차별과 인권의 이름으로 혐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도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애 독재 법리 앞에서는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오자로 낙인 찍어 동성애 반대활동을 억제 시켜왔다. 그 결과 아직 사리분별이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미친 폐해들은 참혹하다. 전세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에이즈감염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청소년 층에서 놀라울 정도로 폭증했다. 청년(20~24세) 신규 감염자는 2000년 15명에서 2015년 185명으로 무려 12배가, 청소년(15~19세) 신규 감염자는 2000년 2명에서 2013년 52명, 2014년 36명, 2015년 41명으로 무려 18~26배가 폭증했다.

우리나라의 미래세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조장활동 및 부도덕하고 유해한 동성애 독재 보호법리에 의해 불치병에 감염되어 신음하고 있는, 국가 사회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이 참혹한 현실은 성적지향이 결코 법으로 보호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애 독재법리의 부당성

동성애 독재 옹호자들의 주장은 동성애자들이 동성

애자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차별을 없애달라는 것이지만, 실제로 입법 시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이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민주통합과 통합진보당에서 각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성적지향 문구를 근거로 동성애 및 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활동을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 강제적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개인의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에 기해 동성애 및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일체의 비판활동을 금지시키겠다는 사실상의 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어느 누구에게도 이러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도 이러한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애 독재 법리 앞에서는 그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권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부도덕한 욕구 및 행위에 불과한 성적지향을 모든 인간에게 부여한 인권보다 앞세우는 동성애 독재법리는 이치적으로나 법체계적으로나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부당한 법리이다.

**각 교회와 목회자들이 연합하여 성도들을 깨워내는 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회와 목회자들은 서구 선진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성경적 성윤리가 붕괴된 원인이 동성애 독재 옹호자들의 공격에 대해 교회들이 제대로 된 연구와 학습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침묵하고 분열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들이 솔선하여 동성애와 관련한 정확한 전문지식들을 집중 학습하여 동성애를 금지하는 복음적 진리를 직접 자신의 설교 등을 통해 선포하고 실행함으로

써 성도들을 깨워내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일치된 목소리로 동성애 독재 법률인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고, 이러한 동성애 독재 법리의 뿌리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삭제 개정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동성간 성행위의 만연으로 인해 개인·사회·국가에 초래하고 있는 재앙과 같은 폐해와 혼란을 줄여가고 감소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본 칼럼은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와 함께 합니다.

(국민일보 8/12일자 발행)



글 | 조영길

조영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1988)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1996).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년간 노동팀에서 활동했고, 그 후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를 설립(2000)하여 현재까지 약 20여년간 주로 노사관계 관련 법률자문 업무 및 노사관계개선 컨설팅 업무에 주력해왔다.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폐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다. 동성애 확산 방지를 위한 강연, 학술대회나 세미나에서 발제 또는 토론 참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론이 가지는 심각한 위험성, 특히, 우리나라의 선량한 성윤리 훼손의 폐해와 분별력 약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유해성들을 적극적으로 알려 왔다.